##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6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 민형배·신장식·전종덕

정혜경 • 민병덕 • 윤종오

김종민·조 국·이기헌

조계원 · 김선민 · 서왕진

박은정 의원(13인)

#### 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해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정치적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지적합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65조제1항·제4항 삭제 및 제2항).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88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지방공무 4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지방공무 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를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5조와 제66조를"을 "제65조를" 로 한다.

제6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에서"를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84조의2 중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제44조 또는 제45조"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처하고, 같은 법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

- 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처한다"로 한다.
-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제55조"를 "「사립학교법」제55조"로 한다.

③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6 조제1항 본문"을 "제64조제1항, 제6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	제3조(적용 범위) ①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			
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			
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			
까지, 제59조의2, <u>제60조부터</u>	제60조부터		
<u>제67조까지</u> , 제69조, 제84조 및	제65조까지, 제67조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②		
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u>제65조와 제66조를</u>	<u>제65조를</u>		
적용하지 아니한다.	<u>.</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u>&lt;삭</u>		
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u>제&gt;</u>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			
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u>선거에서</u>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5. (생략)

-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 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은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 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2) <u>선거에서 그 지</u>
위를 이용하여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u>&lt;삭 제&gt;</u>

<u><삭 제></u>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4조의2(벌칙) <u>제44조·제45조</u> <u>또는 제66조</u>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의2(벌칙)	제44조	또는	제4
5조			